

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노인장애인복지과)

제출일 : 2022. 6.

1. 제안이유

-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및 사산아의 경우도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및 사산아의 경우에도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(2021년 5월 14일) 「 ‘영·유아 화장’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개선 권고」에 따른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